

의안번호	제121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5. 6. 24. (제240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출자	복지문화국장 김창현
제출연월일	2015. 6. .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목을 수정함.
- 나.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1조).
- 다.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 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6조제1항).

4. 검토의견

가. 구의회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서의견
<p><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p>	<p><조례 제목>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p>	수정안 동의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수정안 동의
<p>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u>자원재활용</u>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u>자원재활용</u>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p> <p>② (현행과 같음)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p>	<p>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p> <p>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p>	수정안 동의
<p><현행과 같음>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쓰레기줄이기와 <u>자원재활용</u>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순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p>	수정안 동의

나.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강남구의회 수정사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개정문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므로 구의회에서 의결 이송되어온 수정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

-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원재활용”을 “자원순환”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기물관리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자원순환 집행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을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 집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원재활용”을 “자원순환”으로,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자원순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폐기물관리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② ----- ----- -----

조정한다.

1. 2. (생략)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5. (생략)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

1. 2. (현행과 같음)

3. 자원순환 집행계획-----

4. 5. (현행과 같음)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 서울특별시장-----

----- 고려하여 -----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 집행계획-----.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자원순환-----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반 폐기물배출자

② (생략)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

② (현행과 같음)

<삭제>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

<삭 제>

<삭 제>

리)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과태료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삭 제>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문화국 청소행정과	
연 락 처	(02) 3423 - 5982